

통일평화와 미래세대

방향과 관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이 자료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에 근거하여 발간되었습니다.

1999년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거의 매년 ‘통일교육 지침서’가 발간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판부터는 그 명칭을 ‘평화·통일교육 : 방향과 관점’으로 바꾸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발간하지 않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비롯한 통일교육의 현장에서 어떤 시각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가르쳐야 하는지와 같이 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 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일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각계 전문가와 학교 현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견해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차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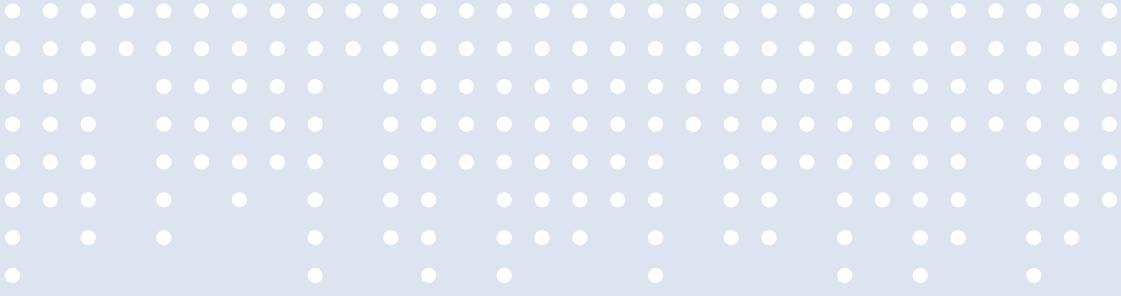
다만, 이번 자료는 완성본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통일교육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더 많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있는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자세한 지식과 정보는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통일문제 이해』·『북한이해』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05
II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09
III	평화·통일교육의 내용	19
IV	평화·통일교육의 방법	33
부록	통일교육 지원법	39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I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중략)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육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분단이 70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단 상황을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며 통일을 부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이 더 이상 민족적·당위적 의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해야 하는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점 등이다.

통일을 달성해야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일지상주의는 경계해야 함을 이해시킨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로, 이는 전쟁의 비극이 다시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일치된 자각과 동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 실천의지와 역량을 신장시켜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한반도에는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이 영위하는 삶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안보의 기초는 군사적 위협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들로부터 인류 보편적 가치와 민주적 제도를 지켜나가려는 건전한 안보의식을 갖추는 데 있다. 이러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한 안보역량의 강화가 평화통일의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이다. 균형 있는 북한관은 북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서 북한에 대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지만 통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는 관점을 말한다.

즉 분단 현실에서 북한은 같은 동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인 이중적 존재라는 사실을 균형 있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균형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북한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화의식 함양

분단 이후 지속적인 남북 간 체제경쟁과 대립은 상호불신과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민족 간 화해와 통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왔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에도 분단 경험 세대와 전후 세대의 인식 격차, 개인별·계층별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일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상대를 배제하고 갈등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와 관용의 정신, 평화의식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 간의 사회적 통합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민주시민의식 고양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민주·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은 자유와 인권, 복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기르도록 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II

평화·통일교육의 중점 방향

1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우리 민족은 장기간 분단의 고통 속에 통일된 국가를 확립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분단 상황의 지속은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등 여러 측면에서의 폐해를 낳고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분단의 장기화는 남북 간 동질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분단의 고통과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와 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통일은 일차적으로 분단 극복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이다.

분단 극복과 통일은 일차적으로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 등을 통해 달성해야 할 민족적 과제이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의 과정은 주변국들의 개입 속에 진행되었고, 따라서 분단의 극복과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남북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 양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에 의해 비롯되었고,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통해 민족 간 갈등, 대립이 심화됨으로써 공고화되었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은 남북 분단의 극복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의 구축 등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인권문제 등은 북한만이 아닌 지역적·국제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일은 한반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 전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통일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한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문제는 단순히 남북한의 재결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국제문제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바란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통일 이후 새롭게 만들어질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통일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변국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남북한이 화해협력을 도모하면서 주변국들에게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4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이다.

통일은 평화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통일을 원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일이 되지만 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으며, 통일을 통해 미래의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이 실현되기를 희

망하고 있다. 통일이 우리 민족 모두의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때, 이런 통일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모든 과정이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분단과 전쟁 등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평화 정착이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대결과 긴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평화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항구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고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통일에 앞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

5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의 과정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강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토대가 된다. 오늘날 안전이 다각적으로 위협받는 냉엄한 현실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긴요한 일이다.

평화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공영과 평화정착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을 함께할 상대로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호혜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 오랜 분단 시기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 속에 상호 불신과 적대의식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통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

6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북한은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통일의 기반들을 만들어 가는 교류협력의 상대이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북한을 교류협력의 상대로만 인식하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 하에 놓여 있는 남북 간의 현실을 도외시할 우려가 있으며, 북한을 경계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

북한의 이중성은 분단된 남북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지만, 우리는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립에서 협력과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북한 당국의 공식 문헌이나 관영 언론매체는 체제 선전의 매체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나 방북자들의 북한 경험은 지역적 또는 개인적 경험이라는 제약성을 띠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특정한 관점에서 단편적인 모습만을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식적 문서나 언론 보도,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북한식 체제의 특성 혹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들을 이해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이 초래된 본질적 요인들을 자유·평화·인권·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 기준에 토대를 두고 판단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8 북한은 우리와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를 공유하고 있다.

남북으로 분단되기 이전 우리 민족은 수천 년간 공통의 전통과 문화 및 언어를 공유해왔다. 그러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남과 북이 서로 상이한 체제를 유지해 온 결과 사회 문화적으로 단절되어 민족으로서 동질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구한 민족의 역사과정에 비추어보면 일시적인 왜곡 현상이다. 오랜 분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역사·전통과 문화·언어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연결고리이며, 통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더욱 키워나가려는 실천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남북 간 이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 통일의 관점에서 상호 이해하고 공존시켜 나가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9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단독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남북은 상호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북한은 국가 간의 관계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민족내부적으로는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에 대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도 남북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10 남북관계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화해협력, 신뢰증진 등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해야 한다.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의 「10.4선언」 등 기존의 남북 간 합의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만들어 낸 노력의 결실로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남북이 기존에 체결한 합의를 존중할 때, 남북관계는 그 기초 위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이 매번 다시 출발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이 체결한 각종 합의들의 존중과 이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남북 간의 합의가 존중되고 또한 합의 실행이 제도화되면 남북 간에 상호 신뢰가 확대되어 남북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굳건한 토대 위에서 발전할 것이다.

11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에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이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단 이래 남북은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면서 공존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호 대립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한다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12 통일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자유·인권·평등·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통일의 이유에는 민족사적 당위성에서부터 현실적인 필요성까지 다양하겠지만 통일은 무엇보다 분단의 현 상황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 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삼아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평등과 복지 등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통일된 민족공동체는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다른 민족을 배척하지 않고 함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13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반도에서부터 평화와 경제 협력의 선순환 구도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적 위치에 있다. 단절되어 있던 한반도의 남과 북을 연결하여 대륙과 해양을 잇는 육·해·공로 건설을 완성함으로써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주변국들도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남과 북, 동북아시아 주변국 간의 호혜협력의 확대는 아시아 전체의 공동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며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완화시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14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랜 분단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통일을 단기간에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남북이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 경제·사회·문화 공동체 등을 먼저 건설해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까지 달성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남과 북의 이질화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1민족 1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급격한 통합이 가져올 충격을 고려하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의 과정이 자명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은 남북한 체제의 차이, 경제적 격차, 문화적 이질성 등을 점진적으로 극복하면서 통일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가야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다. 남북한이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구해 나간다면 평화공존·공동번영을 위한 민족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15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또한, 통일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통일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일교육은 통일문제를 둘러싼 여러 시각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방식도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에 기초하여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방식,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통일교육이 국민적 합의를 넓혀가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통일교육의 내용



평화·통일교육의 내용

1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1) 분단의 배경

남북 분단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뒤이은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으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 점령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은 시작되었고 미·소 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분단은 강화되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이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의하자,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은 신탁통치에 대한 찬반 여부로 상호 대립하게 되었다. 결국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었다.

6.25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민족 구성원 상호 간의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심리적 분단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분단은 장기화되었다.

2) 통일의 필요성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고, 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공동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분단은 남북한 사이에 소모적인 경쟁과 대립의 지속으로 인하여 다양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남북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분단비용은 분단 상황에서 지불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분단으로 인해 적정규모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 규모의 경제효과 포기과 같은 경제적 손실,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경쟁비용 등과 같은 외교적 손실 등 유형적 측면의 비용과 전쟁의 위협, 이산가족의 고통, 남남갈등 등과 같은 무형적 측면의 비용이 있다.

통일은 분단 구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정전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분단 구조는 사소한 계기로 긴장이 고조되고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분단 구조는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로 인해 많은 자원을 낭비시킬 뿐 아니라 구성원의 고통과 손실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분단 구조에 따른 상황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소모적인 자원의 낭비와 사회적 비용의 절감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남북한 주민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초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우리 민족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 혈통을 지니고 있으며, 수많은 국난을

겪으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단결해 통일 국가를 발전시켜 온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민족 간 갈등은 오랜 기간 같은 민족으로 간직해 왔던 공통의 민족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이러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은 유·무형의 편익을 가져온다.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통일 이후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지만, 이러한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훨씬 크다. 통일편익에는 통일되면서 분단비용이 소멸되는 것과 통일로 새롭게 발생하는 유·무형의 이익이 있다. 즉 통일로 인해 분단비용의 해소와 함께 시장의 확대, 산업 및 생산요소의 보완성 증대 등의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전쟁 위험 해소 등 비경제적 편익도 발생한다.

2 북한 이해

1) 북한의 정치·외교

북한의 정치체제는 수령의 유일지배를 핵심으로 하는 당-국가체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국가체제라는 사회주의체제의 보편적 성격에 더해서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영도자의 1인 지배체제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당-국가체제에서 당은 국가 권력의 원천으로 다른 국가기관보다 상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정·군 위에 최고영도자가 군림하고 있는 유일지배하의 당-국가체제이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토대를 둔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시대의 통치이념으로서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

는 통치이념이며, 선군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군대에 의존하는 군 우선의 선군정치를 정당화하는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이다. 김정은 시기에 와서는 당규약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바탕을 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통치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 안정과 생존을 최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였다. 이에 북한은 체제 안정과 생존에 중점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면서, 서방세계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도는 북한의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기반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도 위협하고 있다.

2) 북한의 군사

북한의 군은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의 군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통치자와 당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령과 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군은 비대칭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군사력 증강에서 비대칭 전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 증강이 정체된 가운데 전략무기 중점 개발로 군 중심의 위기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통해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여 대외적으로는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

3) 북한의 경제

북한의 경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이나 현실적으로 시장화가 확대되고 있는 이중경제 구조이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점차 중앙집권적 계획경제가 위축되고 시장화 현상이 확산되었다.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오늘날 북한의 경제체제는 형식적인 국가계획 속에 사실상 국영기업소나 협동농장은 물론 주민 등 경제주체들이 시장을 활용하여 계획지표를 달성하고 가계경제를 유지하는 이중구조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북한은 최근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집중노선’으로 정책 강조점을 바꾸었다.

북한은 2013년 3월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결정하였다. 병진노선은 김일성 시대의 ‘경제와 국방 건설 병진 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핵무력 강화가 과학기술 발전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른 경제 부문의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핵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노선에 따라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중지를 선언하고, 경제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제한적 대외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김정은 시대에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인 시장화 현상을 부분 수용하여 ‘종합시장’을 공식 허용하고, 국영기업소에 일부 경영 분권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대외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1991년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시작으로 다수의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지만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대북제재로 현재 나진·선봉 특구만이 운영되고 있다.

4) 북한의 사회문화

북한 사회에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북한 사회는 국가나 집단을 우선시해 왔지만 장기간의 경제난 지속으로 배급제가 붕괴되고 주민들이 생계를 시장에 의존하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국가나 사회주의 이념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 활동을 위한 유동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공식적인 조직생활이 약화되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소비 및 문화 생활 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장화 확산은 계층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개인경제 활동이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경제적 부를 이룬 사람들이 나타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 계층 구조도 기존에는 출신성분에 기초하던 것에서 점차 경제력이 중요시되는 것으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

또한,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권력을 가진 계층과 시장에서 재산을 축적한 계층 간의 결탁을 통한 권력 계층의 부패와 권력남용 등 사회적 일탈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과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내세워 ‘수령은 아버지, 당은 어머니이며, 인민들은 자녀’라고 규정하면서 위계적인 사회 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 당의 부문별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당은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 모든 주민들의 생활과 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은 소학교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조선소년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등 연령 또는 계층 및 직업에 따라 가입한 단체별로 정치학습과 생활총화 등을 통해 조직적 통제를 받고 있다.

북한의 문화는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에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이 가미되어 있다.

북한은 북한식 사회체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른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해 왔다. 즉,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 문화에 북한식 사회주의 특성을 가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설, 추석과 같은 전통적 명절 외에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이나 정권과 당 창건 관련일 등을 명절로 규정하여 지키고 있다.

북한은 문화와 예술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고, 노동계급화하며, 전 사회를 혁명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적인 다양성보다는 집단주의적·체제순응적 성격을 띠고 있다.

5) 북한 주민의 인권

인권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과제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인권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1948)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이런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 권리, 법 앞의 평등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생존권, 사회보장권, 환경권,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출신 성분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인권 제한 및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2003년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매년 채택해오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2004년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임명하는 한편 2013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이후 2014년 북한의 인권실태 등이 담긴 활동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론화에 노력하고,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 조치를 촉구해오고 있다.

3 통일과정과 미래상

1) 통일의 과정

통일은 남북 간 상호 이해,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통일은 개인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민족의 생존 및 번영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남북 간 이질감을 고려할 때 그것을 단기간에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통일은 남북이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남북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남북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은 분단 이후 6.25전쟁을 겪었고 이후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도발 등으로 인해 상호 대결과 갈등관계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시작되면서 상호 협력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특히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발표시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 사회문화, 인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 간에 화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도 이루어져 왔다.

통일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분단 상황을 평화·통일 지향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이 상호 신뢰 속에 평화공존을 이룩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신뢰를 쌓아갈 때 한반도의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룩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통일은 남북 간 경제교류를 넘어 정치·외교·사회·문화 등 교류협력이 다양화될 때 진일보될 수 있으며 이는 남과 북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2) 통일 미래상

통일은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통일은 분단으로 인한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제약과 구속에서 벗어나서 남북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복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게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거주, 여행, 결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넓은 선택의 기회와 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통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국가들과의 공동번영을 이끈다.

통일은 한반도의 단일 경제권 형성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천연자원·노동력의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은 남과 북을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공간을 대륙으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통일한국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로 인

해 동북아시아 국가 간 경제권 형성과 역내 교류협력이 가속화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이끌어 갈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의 전쟁 위협 제거와 평화 정착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북한의 핵 개발과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 참고 |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구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	주체사상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주체	민족 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통일과정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3단계)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국가의 기구	통일정부, 통일국회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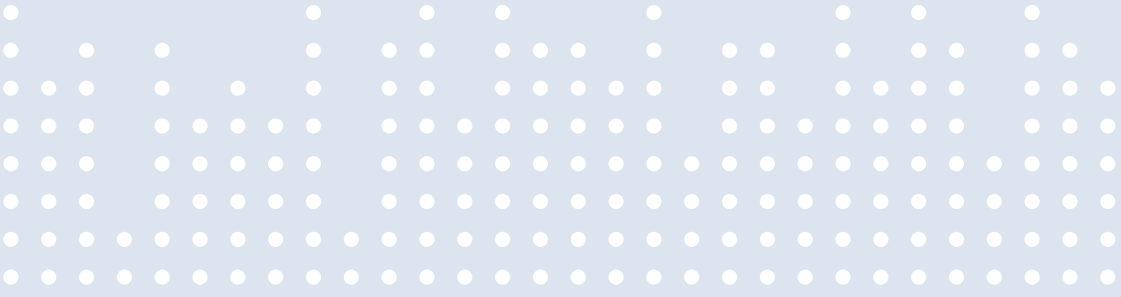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평화·통일교육의 방법



IV

평화·통일교육의 방법

통일교육은 변화하는 환경은 물론 학습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방법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세대별로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통일교육은 모든 세대의 학습자들에게 통일·북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통일의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에 대한 지식은 물론 통일 감수성과 실천 능력까지 고르게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가 통일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탐구와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1 학습자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일반적으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들은 연령, 성별, 계층, 직업, 학력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다. 통일교육도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계는 신체적 발달과 함께 지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시기이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국가애와 민족애와 같은 공동체적 정서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놀이·체험형 또는 문화·감성적 접근을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자율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탐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시기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남북관계의 현황과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탐구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진로나 직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이므로 통일·북한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 짓고 긍정적인 통일미래 비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성인 대상 통일교육은 대학생, 직장인, 군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통일교육은 학교·직장·지역사회 등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공동체의 특성과 관심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와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2030 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당위론적 인식보다는 현실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은 통일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방향에서 이뤄져야 하며, 자신의 삶과 연관된 다양한 통일 관련 체험 활동 등의 교육방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세대별 특성과 관점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통일논의가 이뤄지게 하고 세대를 넘어 긍정적 통일인지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

2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통일교육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뿐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정서와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 등이 모두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인지·정의·행동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인지적 영역에서 북한·통일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정보와 사실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주어질 때, 학습자는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의적 영역에서 통일의지와 열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학습자들이 통일을 자신의 문제로 느끼고 이를 자신의 가치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북한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 문제나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 정착상의 어려움 등에 대해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동 역량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통일 관련 활동에 참여하며, 나아가 통일과 관련된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3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

학습자들이 통일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으려면 학습자 중심의 통일교육이 도움이 된다. 학습자는 주도적으로 통일·북한 문제 관련 주제에 대해 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 남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통일을 바라보는 종합적 사고 능력이 배양될 것이다.

특히 집단 활동을 통한 협동학습 방식의 통일교육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열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학습자가 상호 이해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흥미와 관심을 증진하는 다양한 방법의 활용

강의식 교수법은 지식의 전달이 일방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강의식 교수법의 한계를 극

복하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적절한 통일·북한 관련 애니메이션이나 공감 영상 또는 뮤직비디오나 동화 플래시 등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통일 UCC 만들기, QR코드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등을 통일교육에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밖에 스마트폰이나 웹상 토론이나 설문조사와 투표 등도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통한 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셋째, 소집단을 활용한 통일교육 방법이다. 조별로 통일·북한 관련 선행학습을 진행한 뒤 수업 시간에 토론과 적용을 실시하는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이나,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으로 만든 뒤 서로 질문하며 토론하는 하브루타(Havruta) 교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상황극이나 역할놀이 등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교육 방법이다. 전국에 산재한 12개 통일관이나 비무장지대 인근 통일·역사 체험관 또는 지역사회의 통일 관련 명소를 탐방하면서 통일문제를 느낌으로 접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이나 대북 인도지원 또는 남북경협 유경험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오랫동안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러한 유경험자들과 대화 또는 특강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통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부록

통일교육 지원법



부록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18.9.14.] [법률 제15433호, 2018.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3.13.]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09.10.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3.13.>]

제5조 삭제 <2008.12.31.>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13.>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 <2018.3.13.>]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 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 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3.]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3.13.]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3.]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3.]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1.7.28., 2013.3.23., 2013.8.13.>

-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0.19.]

-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12.31.]

-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 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3.13.>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⑦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본조신설 2009.10.19.]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8.3.13.]

부칙 〈제15433호, 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수행하는 시설 중 통일교육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통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발행 2018년 8월(2018년 10월 일부 개정)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TEL 02) 901-7011 FAX 02) 901-7029

편집·제작 (주)늘품플러스 02-2275-5326

※ 동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변이형 코로나
COVID-19
방향과
관점

※ 동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